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!

<b>1</b>	<b>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</b>	·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(단, 2018.12.11.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)
<b>2</b>	<b>신청유형 확인 필수!</b>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) - 우선공급 50% 소득 140% 이하 (맞벌이 160%) - 일반공급 20% 소득 160% 초과 - 추첨제 30% (부동산가액 3.31억 이하 충족)	· 「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」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기준이내이어야 합니다. · '21.11.16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(30%물량)가 신설되었습니다. (단, 부동산 가액(토지 : 공시지가, 건축물 : 시가표준액, 전세보증금 제외) 3.31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)
<b>3</b>	<b>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</b>	·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(경주시 경상북도 거주자, 전용 59㎡·84㎡ 200만원 이상 충족)

## 공급유형별 청약 자격조건

구분	내용
<b>신청 자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</li> <li>·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</li> <li>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) 이하인 분 (단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)은 소득우선공급(70%) 자격으로 신청가능</li> <li>-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억3,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(30%) 자격으로 신청가능</li> </ul>
<b>당첨자 선정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우선배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</li> <li>-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순위(미성년 자녀유무)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</li> <li>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li>· <b>순위산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순위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(「민법」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,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)가 있는 경우(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,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)</li> <li>- 2순위: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/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2018.12.11.시행) 부칙 제5조(상기 “청약자격”참조)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·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주택건설지역(경상북도 경주시) 거주자</li> <li>2.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(임신,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)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</li> <li>3.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</li> </ol> </li> </ul>

##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6,030,160원	7,094,205원	7,094,205원	7,393,647원	7,778,023원	8,162,39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6,030,161원~ 7,236,192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094,206원~ 8,513,046원	7,393,648원~ 8,872,376원	7,778,024원~ 9,333,628원	8,162,400원~ 9,794,879원
	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6,030,161원~ 8,442,224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094,206원~ 9,931,887원	7,393,648원~ 19,351,106원	7,778,024원~ 10,889,232원	8,162,400원~ 11,427,359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7,236,193원~ 9,648,256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513,047원~ 11,350,728원	8,872,377원~ 11,829,835원	9,333,629원~ 12,444,837원	9,794,880원~ 13,059,838원
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8,442,225원~	9,931,888원~	9,931,888원~	10,351,107원~	10,889,233원~	11,427,360원~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시 일반공급 3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
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- 추 첨 제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상기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, 상기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.

※본 홈페이지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